제안서작성관련 자주하는 질문

2025.04.07



< 한미공동연구(RFP) 첨부서류 제출안내 > ※ 자세한 사항은 "공모안내서"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필수제출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시 제출, 해당없는 첨부서류 양식은 삭제 후 업로드 * 해당사업은 국제 공동연구이므로, 첨부 2 필수제출 * 참여기업(국내)이 있는 경우는 첨부 8, 9, 10 필수제출 * 장비구입 계획이 있는 경우는 첨부 11 또는 12 필수제출 * 첨부 13, 14, 15, 16, 17 은 선정 이후 협약 시 제출 ※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지정된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선별에서 탈락됨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해당없는 첨부서류 양식은 삭제하시고, 첨부한 서류는 체크표시를 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확인 √ 첨부서류 비고 첨부1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 별첨 포함) 필수제출 첨부2 해외공동연구증빙자료 (LOI, Letter of Support 등) 필수제출 첨부3 마일스톤(Milesone) 목표 필수제출 연구기간은 언제인가요?

→ LOI는 양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연구자 서명이 들어간 자유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시 참고해주세요.

 → LOI는 필수제출 서류로 <mark>미제출 시</mark> 결격사유가 됩니다.

→ 해외기관이 2개인 경우 각 해외공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2개인 경우 <mark>각각 작성하여</mark> 2개 제출하셔야 합니다.

Mayo Clinic

June 18, 2015

Dear

I am happy to provide this letter of collaboration in support of you; RO1 proposal entitled "Imechanisms." As the director of the Genetics and Model Systems Core, my passion has been to develop genetic editing tools as a service line for our investigators engaged in the NIH-funded Center for Cell Signaling, Mayo Clinic. As we discussed, we have deep experience in several tools that will be of use in your system including CRISPRs, TALENs, and the Sleeping Beauty and Tol2 transposon systems. Your choice to utilize TALENs to edit primary T cells makes sense given our published experience in the genetic editing of lymphoid cells lines with this system. We are also ready to help you try other tools such as the rapidly developing CRISPR/Cas9 systems as they become available. I look forward to our collaboration, particularly as it relates to the genetic editing of WT lymphocytes and the treatment of active colitis with Treg cellular therapy.

I wish you every success with your application and look forward to continuing collaboration on this interesting project.

Sincerely,

1차년도: '25.07.01-'25.12.31 (6개월) 2차년도: '26.01.01-'26.12.31 (12개월) 3차년도: '27.01.01-'27.12.31 (12개월) 4차년도: '28.01.01-'28.12.31 (12개월)

첨부 3 마일스톤(Milestone)은 영문 작성 혹은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여 작성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u>과제수</u> 확인서 (스캔본 첨부) (필수제출-국내)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u>과제수</u> 확인서

해외공동연구증빙자료 (LOI, Letter of Support 등)

마일스톤(Milesone) 목표

사업명	보스턴코리아공동연구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본 연구개발기관에서는 본 과제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가 다음과 같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연구개발기관	연구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수	신청중인 연구개발과제수*			
구분	성 명		책임자 수 (단위 : 개)	공동연구자 수** (단위 : 개)	책임자 수 (단위 : 개)	공동연구자 수** (단위 : 개)		
			XE (1 1)	VE 11 117	VE 11 117	VE 11 117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1								

- * 신청중인 연구개발과제 수: 동 과제 및 신청중인 과제, 선정평가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모든 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하여 계산함
- ** 공동연구자 수에는 책임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함 [작성예시> 주관연구책임자로 2개, 공동연구자로 2개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 2책 4공임]

1. 작성대상

필수제출

필수제출

1) <mark>국내기관</mark>만 대상입니다.

Professor of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 2) 지원하시는 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 자와 공동연구기관연구책임자만 작성 (참여하 는 모든 연구자 또는 biosketch 작성하는 key personnel **모두를 작성하는 것 아닙니다**)
- 3. 위탁연구책임자는 제외입니다.
- 2. 작성요령

참여하고 계신 과제 중

- 1)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 참여시 1책 1공에 해당
- 2)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1개과제 참여시 1공에 해당
- 3) 참여연구자로 참여시 1공에 해당
- *예시: 주관 2개+공동1개+참여2개 => 2책 5공 ※ 본과제는 국제공동연구 중 해외기관이 현물 /현금 매칭하는 공동기관형으로 현재 수행중 과제가 3책5공인 연구자도 지원가능합니다.
- ※ 신청 시점에서 허위기재 시 결격사유가 되고, 선정이후에라도 과제 선정취소사유가 되오니 확인하신 후 작성부탁드립니다.

1

3

첨부2

첨부3

첨부1

2

4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목록 (국내기관) 별첨 **※** <u>작성범위</u> : 주관 또는 <u>공동연구책임자가</u> 수행 중이거나 신청 중인 <u>국가R</u>&D 과제 □ 연구책임자(*주관연구개발기관명, 성명*) 진행 연구비 부처명 연구 수행 국제공동 참여 유형 총연구기간 /신청 연구과제명 /사업명 연구 여부 (단위: 중 억원) *주관연구책임자* 'yy. mm. dd. 공동연구책임자 진행 중/ 0000 0000 0000 신청 중 'yy. mm. dd. 참여연구원(1공) 중 선택 ※ 수행하는 과제가 여러개인 경우 위의 표를 복사하여 사용 ※ 2024년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지원사업에 신청한 경우 작성 (미해당시 삭제) 국내외 공동연구 주관연구기관 연구과제명 참여유형 구분 주관연구책임자 유형1 또는 2 *공동연구책임자* 중 참여연구원 중 선택 선택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확약서 (스캔본 첨부)↓ 기업이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필수제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확약서↓ 사업명 -사업명 보스턴코리아공동연구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번호 🗸 <u>연구개발과제명</u>↓ 연구개발과제명 -<u>연구개발기관↓</u>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단위: 천원) 구분↓ 구분(해당란에 체크)← 구분(해당란에 체크) 구분↓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4차년도 ← 합계 🚚 현금↓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귍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 외 ↓ □ 연구개발기관 외 ↓ 현물귍 현물↓ 지원금↓ 지원금↓ □ 지방자치단체 ↓ □ 지방자치단체 ↓ 합계↓ 합계 🗸 본 기관에서는 상기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상기와 같이 본 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 비용을 출자할 것을 확약하며 기술료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연구장비에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구축 시 제출필수) (해당시) 첨부9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시설장비의 개요↓ 구 분 내용~ 보스턴코리아공동연구지원사업 4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 해야 함 점부10.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1억 원 이상 장비 구축 시 제출필수) (해당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Ⅰ. 사업 개요』 장비를 등록・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일반사항↓ 사업명 보스턴코리아공동연구지원사업 ~ 이행이 필요함을 안내해야 함 연구개발과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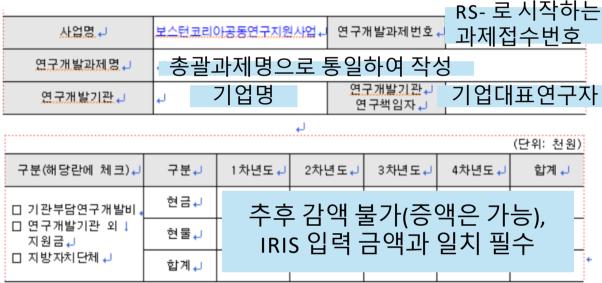
5

6

7

→ 2024년 보스턴코리아 공동연구지원 사업에 신청한 이력이 있으실 경우, [별첨.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목록] 에 해당 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주관/공동기관 중에 국내기업만 작성 필수 (위탁연구기관은 선택사항)



본 기관에서는 상기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상기와 같이 본 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 비용을 출자할 것을 확약하며 기술료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 해외기관의 연구시설장비(3만달러 이상) 구입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연구진행에 있어 필수적으로 구매해야하는 경우 사업단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참고.국제공동연구개발 매뉴얼 p43)

제3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 ▶ (시설·장비) 국제공동연구는 연구역량이 충분한 해외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상대국에 시설·장비 구축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해외기관에서의 무분별한 연구시설·장비 구축은 지양하도록
- 다만 사업의 성격상 해외기관에 시설·장비 구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은 시설·장비 소유권은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 사용·관리권은 해외기관에 부여해야 하며,
-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도 국내 연구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전주기 관리가 될 수 있도록「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시설・
 - ※ (주의사항) 중앙부처(관리기관 등)는 시설·장비 구축계획이 있는 과제의 경우 협약전에 소유, 관리권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협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국내 연구기관이 소유하는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
- → 국내 기관 장비 구축 신청시 다음페이지 참고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참고 국제공동연구개발 매뉴얼, p75

나. 연구시설·장비비

> 사용 용도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용도

-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항상비
-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 포함)

> 사용 기준

- ※ 중앙행정기관은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해외 연구기관에의 무분별한 연구시설·장비 구축 지양하도록 해야하며, 불가피한 경우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시설·장비비 계상의 필요성을 심의하여야하며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와 위임한 하위법령을 따른다.
 - 해외기관이 연구개발비로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 또는 임차하려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사용계획을 명시하여야
 하며, 구축(발주) 이전에 연구시설·장비의 타당성 심의를 받아야 함
 - 연구개발비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축 계획이 포함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 개발과제평가단에서 과제선정 평가와 병행하여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심의하여야 함.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자체연구시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구축 계획이 포함된 경우 해외기관의 장은 과제협약체결 이후 별도로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에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합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하여야 함
 -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 ② 원래계획에 반영된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검수완료)하여야 함
 - 기관 공통 연구시설·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공통 연구환경 구축비는 계상할 수 없음
 -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 계약이행보증금, 연구비카드 또는 법인카드 취소금액, 환차익
 등은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 현물 계상 기준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임차·사용 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구입·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연구시설· 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함
 - * 구입가 : 연구시설·장비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을 의미하며, 연구개발 기관이 자체생산한 경우에는 제조원가로 적용하여야 함

참고

Commissioned

Principal

Investigator

Organization

Department

Division

■ 2-1. (MASTER) Korea_US_Collaboration_Research_Proposal_final (전체연구내용 합본).docx

 □Cover Page (Master plan) Title of Project (in Korean) Title of Project (in English) J ob title Organization nvestigator Department Contact information Division E-mai Name Job title Principal nvestigator (US) Contact information Division E-mai Job title Collaborative Organization Principal Investigator Tel. Department Contact information Division E-mai Name Job title

:

Contact information

- ✓ 2-1. Master plan cover에는 각 기관의 대표연구자만 입력
- ✓ 국내 PI는 지원 과제의 총괄/주관기관의 역할로 lead PI이고, 미국의 PI는 행정상 co-investigator와 같음 (즉, 미국공동기관 아래 위탁과 생성불가, 별도의 공동기관 생성 불가함)
- ✓ 미국과 국내의 공동기관 수는 제한 없음
- ✓ 1 입력은 작성에 별도의 기준은 없으나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입력하는게 아닌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자만 입력 (예: 선임급 이상, (연구)조교수 이상 등) -> 이 부부은 biosketch 내용을 작성하는 연구자와 맞추어야함
- ✓ '[첨부3]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 폴더에 1번과 3번 웹입력(참고)는 IRIS 입력사항으로 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아닌 IRIS에 입력하는 사항으로 항목이 일부다르고 기존 입력성과에서 선택해서 등록하는 방법으로 IRIS 시스템내에서 확인 후 진행.

2-2 [Principal-KOR] Korea_US_Collaboration_Research_Proposal_final (국내주관기관+위탁 작성).docx

	Cover rage (Finicipal investigator in Rolea)											
	Title of Project (in K		2									
	Title of Project (in E											
I		Name				Job title						
	Lead Principal Investigator	Organization										
	(Korea)	Department				Contact		Tel.				
		Division				information		E-mail				
	Senior/Key P		Job title			Organization						
- 1												

2-3. [Collaboration-US] Korea_US_Collaboration_Research_Proposal_final (해외공동기관별 작성).docx Cover Page (Principal Investigator in US)

Title of Project		2							
	Name		Job title						
Collaborative Principal	Organization								
Investigator (US)	Department		Contact	Tel.					
	Division		information	E-mail					
Senior/Key P	ersonnel	Organization		Role Category					
1									

2-4. [Collaboration-KOb] Korea_US_Collaboration_Research_Proposal_final (국내공동기관별 작성).docx (Cover Page (Collaborative Investigator in Korea)

Title of Project (in K	(orean)	•							
Title of Project (in E	nglish)	2							
	Name		Job title						
Collaborative Principal	Organization								
Investigator (Korea)	Department		Contact	Tel.					
	Division		information	E -mail					
Senior/Key P	ersonnel	Job title		Organization					
1									

✓ 2 제목입력은 모두 동일하게 맞추어야 하고, IRIS에 동일하게 입력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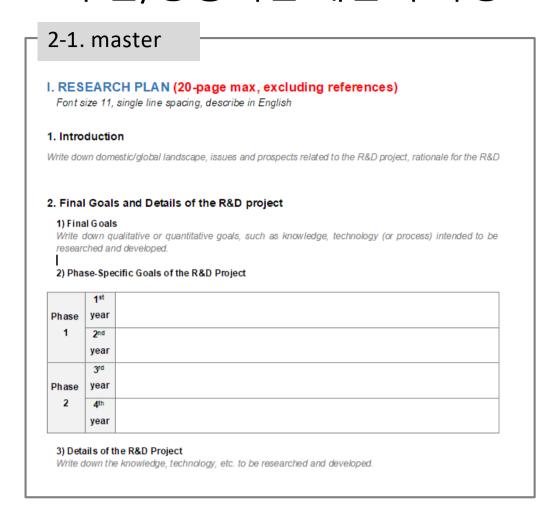
æ	1.	연	7	개	발	계:	힉사	1-P	ART	1(Η,	딕)-	·웹	입	력(참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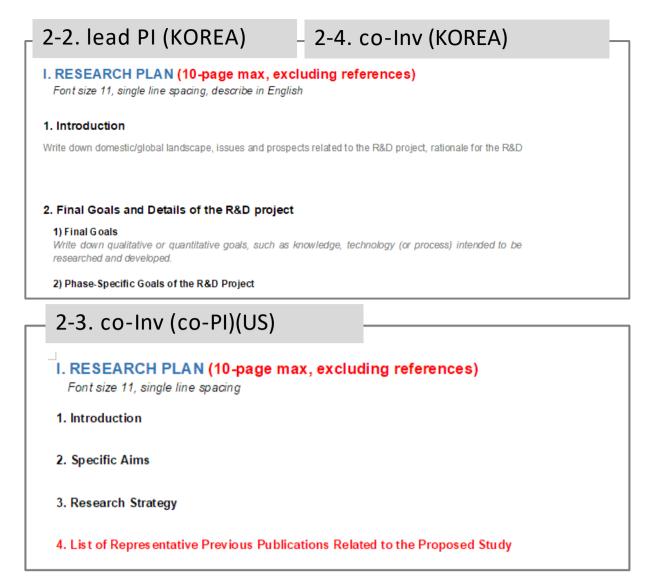
- ☑ 2-1. [MASTER] Korea_US_Collaboration_Research_Proposal_final (전체연구내용 합본)
- ☑ 2-2. [Principal-KOR] Korea_US_Collaboration_Research_Proposal_final (국내주관기관+위탁 작성)
- ☑ 2-3. [Collaboration-US] Korea_US_Collaboration_Research_Proposal_final (해외공동기관별 작성)
- ☑ 2-4. [Collaboration-KOR] Korea_US_Collaboration_Research_Proposal_final (국내공동기관별 작성)
- ⑧ 3. 연구개발계획서-PART3(본문2)-웹입력(참고)□
- ♣ 4. FAQ_수정

or

- 躗 5. [첨부서류] 2025년도 보스턴코리아연구지원사업(한미공동연구지원) 신규과제 공고_첨부서류
- ⑤ 5. [첨부서류] 2025년도 보스턴코리아연구지원사업(한미공동연구지원) 신규과제 공고_첨부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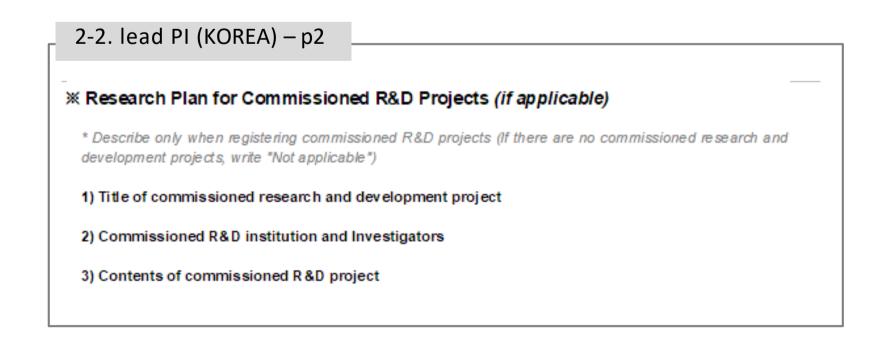
➤ 주관/공동기관 제안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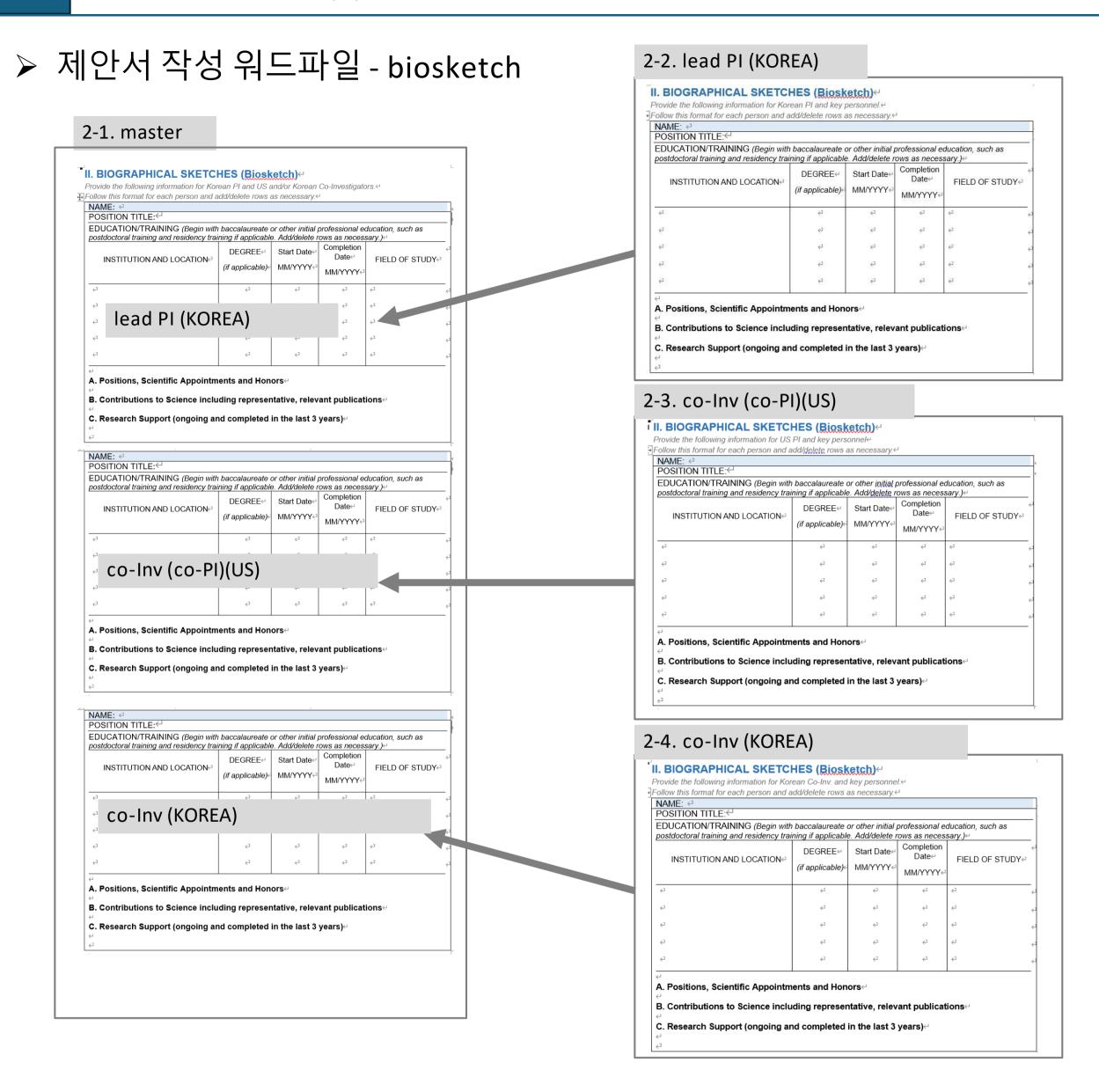
- ✔ 각 제안서 양식에서 research plan만 '2-1. master' 20페이지 이내, '2-2, 2-3, 2-4...' 각각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참고문헌 제외 페이지 수임)
 - 예를들어 2-2. PI(KOREA) 파일 전체를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u>"I. research plan"부분만 10페이지</u> 이내로 작성
- ✓ 2-3. co-Inv (US)는 2-1 또는 2-4의 KOREA양식 참고 또는 NIH-R01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가능

▶ 위탁기관 제안서 작성



- ✔ 위탁연구는 주관기관의 양식 '2-2. principal Inv. (lead PI-KOREA)' 2페이지에 해당 작성내용 포함
- ✓ 해당내용은 주관기관의 research plan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u>위탁연구내용은 주관기관의 research plan</u>

 10페이지 이내에 포함하여 작성
 (위탁기관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주관과제와 위탁기관연구를 모두 포함하여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 ✓ Biosketch 작성 시 제안서 표지와 같은 방법으로 **master에는 각 기관의 PI만 작성**. 각기관의 제안서 biosketch는 cover에 입력한 주요 연구자만 작성(cover에 입력한 key personnel과 명단을 같게 작성함)
- ✔ 주관기관에 위탁연구가 있는 경우, 위탁연구기관의 책임자와 주요 연구자를 주관기관의 biosketch에 포함하여 작성
- ✔ 'B. contributions to science...' 작성 시 연구자의 전체성과 중 <u>대표적인 성과를 연구주제 등으로 카테고리화하여</u> <u>작성</u>
- ✓ 본 제안서와 관련된 선행연구 성과는 I. research plan에 내용 및 리스트를 포함하여 작성